

- 관악구 신림동 706-1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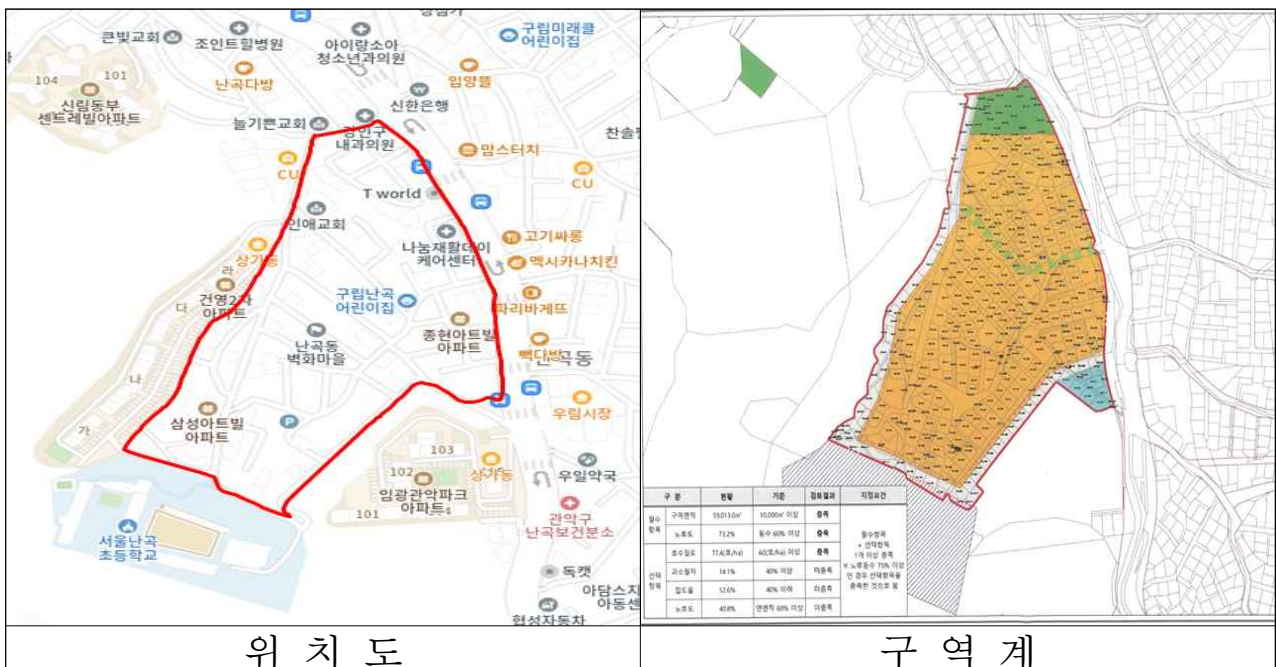
우리 구 신림동 706-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붙임2~5)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철회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동의서 철회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주민신청(주민→區)전까지** 제출, 반대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區 →市)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요청동의서 제출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같음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區 →市)까지 정비구역 지정 반대동의서(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 역 계 : 신림동 706-1번지 일대

※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번호부여 신청인)

- 성 명 : 이정란
- 연락처 : 010-9143-1679

3.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

- 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신림동 706-1번지 일대 제 1호
번호부여일자	2026. 3. 23.
확인(인)	주택과장(인)

4. 공개 장소

- 관악구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고시공고
- 난곡동 동주민센터 게시판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호 가목, 나목, 리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 후보지 신청(區→市)시 사용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재신청시 새롭게 징구하여야 합니다.
-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區→市) 또는 별도 區요청일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후보지로 선정,미선정 및 보류된 구역은 건축허가등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 02-879-6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